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22378 보험급여(유족급여장례비청구) 불승인 결정
원고, 항소인 1. [Redacted]

2. [Redacted]

원고들 주소 [Redacted]

원고들 소송대리인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2구단2028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7.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8. 원고들에게 한 보험급여(유족급여 장례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이 "구체적으로 선내항행 조직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선원법 제69조 제1항과 같이 수리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것도 '승무'에 해당되고 선원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수리업무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선장을 비롯하여 선박운행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선내항행조직이 유지되어 당해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근무기간을 승무 중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선박에 대한 점유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위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나. [redacted] 조합과 [redacted]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특히 월명기에 관한 제19조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월명기에 입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승하선이나 정비작업의 실제 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승무원 모두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의 승무 중의 상태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월명기에 하선하여 입항지([redacted] [redacted])의 인근을 벗어나 방계혈족의 거주지([redacted] [redacted])에서 생활하는 상태를 대기 등의 근무로서 위 규정에 따른 승무 중의 상태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어선원이 하는 업무의 특수성,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취지와 규정형식 및 문언, 어선원 등 재해보상기금, 재정부담능력, 선원법에서 '승무 중'이라고 규정한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었던 증인 [redacted]의 제1심법원에서의 증언은, 본인이 작성한 사고문답서(을 제19호증)의 기재 내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기재 내용과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모순되는 이유에 관하여 별 다른 설명도 없고,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redacte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사고문답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주식회사 [redacted]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원고들은, 망 [redacted]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 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본문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되, 그 범위를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즉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등 참조), 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그 기간 중에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 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만약 원고들의 위 주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가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면 그 주장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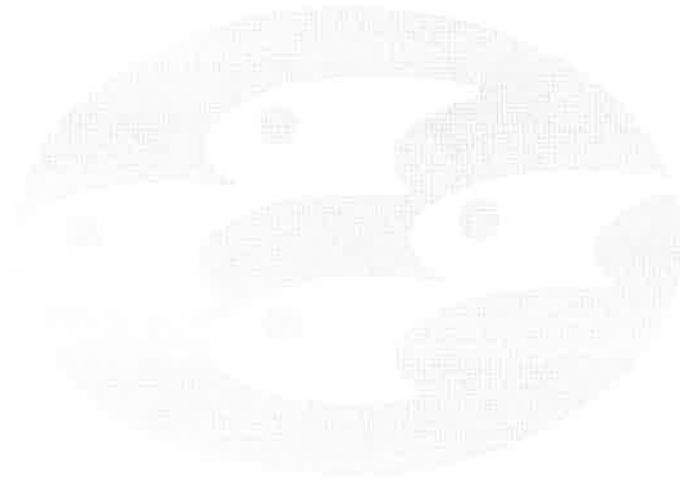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본입니다.

2023. 1. 18.

부산고등법원

법원사무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4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